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 확대 등 〉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9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 확대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 확대 등

가. 개정안 요지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함)의 최초 유효기간을 각각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시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37조(임시허가) ① ~ ④ (생략)	제37조(임시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u>2년</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u>1회</u>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⑤ ----- <u>4년</u> ----- -----, ----- ----- ----- ----- ----- ----- ----- ----- ----- <u>1회에 한하여</u> <u>2년</u> 이하의 범위에서-----

현행	개정안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 ----- --.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생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u>2년</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u>4년</u>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다. ICT 규제샌드박스 개요

- ICT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¹⁾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7조·제38조의2에 근거하여,
- 법령의 미비·불완전 등으로 ICT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제한적으로

1) 2018년 10월 16일 개정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함.²⁾

○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속처리³⁾는 규제의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고,

2) 임시허가⁴⁾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며,

3) 실증특례⁵⁾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 또는 금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임.

2) 국회입법조사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9.3.28.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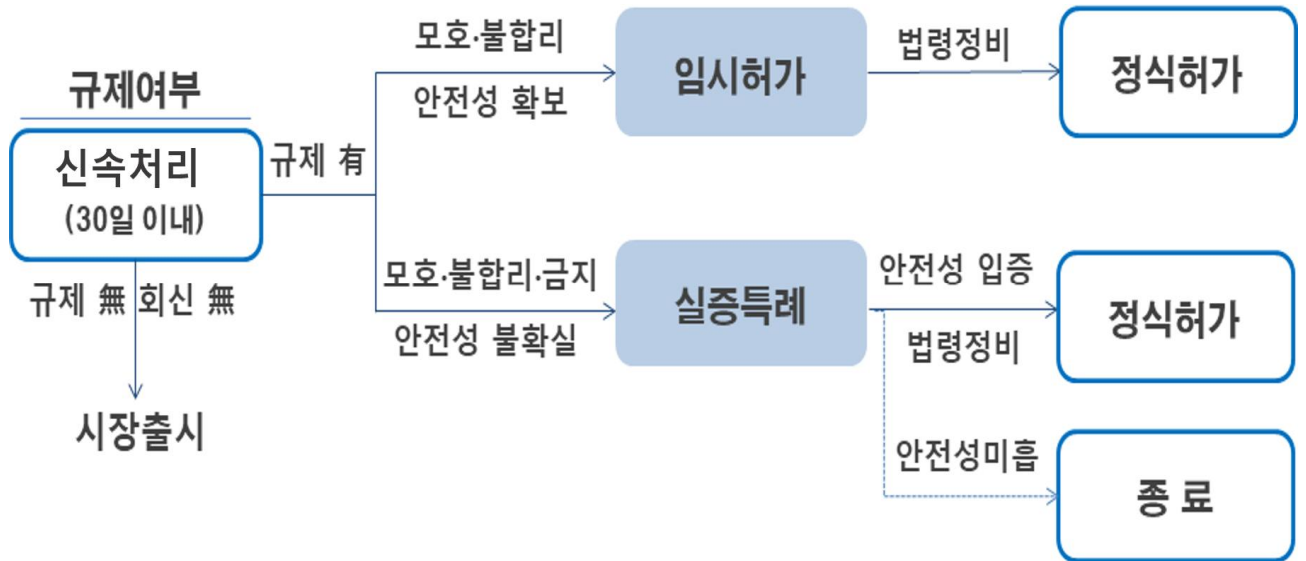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특례 제도 운영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

라.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각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연장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⁶⁾하고 있음.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각각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최초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가 명확해진다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유효기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년으로 확대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입장이나, 다만 유효기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 추진 계획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36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